

국제 탁구 연맹

ITTF 장애인 탁구 대회 개최에 대한 규정

1. 40점 장애인 탁구대회 규정 (ITTF 핸드북 챕터 3장&4장 참고)

1.1 신청

1.1.1 40점 대회의 신청은 늦어도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내협회(NA)에 의해 ITTF 운영본부로 제출되어야 한다.

1.2 승인비와 인두세

1.2.1 €500.00의 승인비는 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1.2.2 참가자당 €30.00의 인두세는 청구서 수령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1.3 현장 점검

1.3.1 40점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후에는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인원(들)에 의해 한 번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진다.

1.3.2 주최측은 수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현장점검 기간동안 환대비용과 인당 USD 25.00의 일급을 제공해야 한다.

1.4 참가 제한

1.4.1 이벤트에는 협회별로 국제 체급분류 카드를 소지한 4명의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1.4.2 주최 협회는 체급 분류된 6명의 선수까지 이벤트에 출전할 수 있다.

1.4.3 더 자세한 정보는 4.9 경기 구성방식을 참고하십시오.

1.5 메달

1.5.1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된다.

1.5.2 단체전에서 메달은 모든 선수에게 수여된다.

2. 20점 장애인 탁구대회 (ITTF 안내서 챕터 3장&4장 참고)

2.1 신청

2.1.1 20점 대회의 신청은 늦어도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내협회(NA)에 의해 ITTF 운영본부로 제출되어야 한다.

2.2 승인비와 인두세

2.2.1 €300.00의 승인비는 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2.2.2 참가자당 €25.00의 인두세는 청구서 수령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2.3 현장 점검

2.3.1 20점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후에는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인원(들)에

의해 한 번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진다.

2.3.2 주최측은 수송비용을 지불해야하며, 현장점검 기간동안 환대비용과 인당 USD 25.00의 일급을 제공해야 한다.

2.4 참가 제한

2.4.1 이벤트에는 협회별로 국제 체급분류 카드를 소지한 6명의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2.4.2 주최 협회는 체급 분류된 6명의 선수까지 이벤트에 출전할 수 있다.

2.4.3 더 자세한 정보는 4.9 경기 구성방식을 참고하십시오.

2.5 메달

2.5.1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된다.

2.5.2 단체전에서 메달은 모든 선수에게 수여된다.

3. 장애인탁구 주니어대회 (ITTF 안내서 챕터 3장&4장 참고)

3.1 신청

3.1.1 주니어 대회를 위한 신청은 적어도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내협회(NA)에 의해 ITTF 운영본부로 제출되어야한다.

3.2 승인비와 인두세

3.2.1 주니어 대회를 위한 승인비는 없다.

3.3 현장 점검

3.3.1 주니어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후에는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인원(들)에 의해 한 번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진다.

3.3.2 주최측은 수송비용을 지불해야하며, 현장점검 기간동안 환대비용과 인당 USD 25.00의 일급을 제공해야 한다.

3.4 참가 제한

3.4.1 협회별로 6명의 선수까지 이벤트에 출전할 수 있다.

3.4.2 주최 협회는 6명의 선수까지 이벤트에 출전할 수 있다.

3.4.3 더 자세한 정보는 4.9 경기 구성방식을 참고하십시오.

3.5 메달

3.5.1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된다.

3.5.2 단체전에서 메달은 모든 선수에게 수여된다.

4. 국제대회 (ITTF 핸드북 챕터 3장&4장 참고)

4.1 승인 국제 장애인 탁구대회 주기

4.1.1 Year 0: 패럴림픽 대회

4.1.2 Year 1: 대륙별 ITTF 장애인탁구 지역선수권 대회/ 세계 장애인탁구 팀 선수권대회

4.1.3 Year 2: 세계 장애인탁구 개인 선수권 대회

- 4.1.4 Year 3: 대륙별 ITTF 장애인탁구 지역선수권 대회/ 세계 장애인탁구 팀 선수권대회
- 4.1.5 매년 신청에 따라 20점 대회의 경우 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하나, 40점 대회의 경우 각기 다른 대륙에서 최대 6개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는 ITTF 장애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4.2 기타 승인 대회

- 4.2.1 다른 모든 기타 대회들은 아래의 대회 전후로 2주간 승인되지 않는다.
 - 4.2.1.1 패럴림픽 대회
 - 4.2.1.2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 대회
 - 4.2.1.3 장애인탁구 지역선수권 대회
 - 4.2.1.4 대회 일주일 전 또는 대회 일주일 후 같은 지역 열리는 대회 또는 같은 대륙에서 열리는 종합 대회를 제외한 기타 국제 장애인탁구대회

4.3 대회 최소 참가요건

- 4.3.1 엔트리에 따라 전체 장애인 탁구 이벤트에서 8개 이하의 체급에서 이벤트가 성립되거나 50명 이하의 선수가 참가하는 경우,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의해 대회가 취소될 수 있다.
- 4.3.2 참가자 미달로 대회가 취소된 경우, ITTF는 조직위원회와 참가자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4 승인비와 인두세:

- 4.4.1 신청이 거절되었을 시, 승인비는 반납되어진다.

4.5 기술 임원 임명

- 4.5.1 임원들은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명된다. :
 - 4.5.1.1 201명 이상 참가대회 또는 1개 이상의 시합장을 운영하는 대회를 위한 TD와 부TD
 - 4.5.1.2 체급분류 패널
 - 4.5.1.2.1 세계 장애인탁구 선수권대회 - 체급 분류사 3명 (최고 체급분류사, 메디컬 체급분류사 1명, 테크니컬 체급분류사 1명)
 - 4.5.1.2.2 지역 장애인탁구 선수권대회 - 체급 분류사 5명까지 (최고 체급분류사, 메디컬 체급분류사 2명, 테크니컬 체급분류사 2명)
 - 4.5.1.2.3 Fa 40점 국제대회 - 체급 분류사 1명
 - 4.5.1.2.4 Fa 20점 국제대회 - 체급 분류사 2명 (최고 [메디컬] 체급분류사, 테크니컬 체급분류사)
 - 4.5.1.2.5 주니어 대회 - 체급 분류사 2명 (최고 [메디컬] 체급분류사, 테크니컬 체급분류사)
- 4.5.2 임원들 (심판장, 주심 및 기타 임원들)은 세계 타이틀 대회와 ITTF 승인 이벤트 경기 임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임명된다. 지역 선수권 및 국제 장애인탁구 대회는 이 규정에 따라 ITTF 승인 이벤트로 규정한다.
 - 4.5.2.1 심판:
 - 4.5.2.1.1 세계선수권 대회: 테이블 대수 X 4 + 4 명 중에서 50%는 주최 협회에서 50%는 국외 협회에서 나와야한다; 또한 이 중 주최 협회의 심판들의 50%는 국내 심판으로 구성될 수 있다.
 - 4.5.2.1.2 지역선수권 대회, Fa 40점 대회, Fa 20점 국제대회: 테이블 대수 X 3 + 4명 중 75%

는 주최 협회에서 그리고 최소 25%는 적어도 3개의 협회를 대표하는 국외 협회에서 나와야한다.

4.5.2.2 필요 시 임원 매니저(Officials managers)를 선정;

4.5.2.3 필요 시 Dr.Wu의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 조작원(Computer Operators)을 선정;

4.5.2.4 지역 및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한 경기장 매니저 (Field of play manager)

4.6 기술 임원을 위한 비용

4.6.1 주최 협회는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임원들을 위한 다음의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TD, 심판, 체급분류사 및 상기 4.5 조항에 명시된 자들):

4.6.2 국제 이코노미 클래스 수송 (도착 및 출발, 비자, 공항 주차비용을 포함한 비용);

4.6.3 대회에 참석한 4.5 조항에 해당하는 임원들과 심판들을 위한 US \$ 25의 일급 또는 세계선수권 대회참석 임원들을 위한 US \$ 30의 일급 (또는 동가의 유로)

4.6.4 심판들을 위한 현지 수송비용

4.6.5 이하 임원들을 위한 모든 환대비용;

4.6.5.1 TDs (기술대표)

4.6.5.1.1 세계 장애인탁구 선수권 대회, 지역선수권 대회, Fa 20점 세계대회 첫날 3일전 저녁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저녁까지;

4.6.5.1.2 Fa 40점 세계대회 첫날 2일전 저녁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아침까지;

4.6.5.2 체급분류 패널:

4.6.5.2.1 세계 장애인탁구 선수권 대회 첫날 1일전 저녁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아침까지;

4.6.5.2.2 지역선수권 대회, Fa 20점 세계대회, 주니어 대회 첫날 3일전 저녁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아침까지;

4.6.5.3 심판장 :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 대회, 지역선수권 대회, Fa 40점, Fa 20점 세계대회 첫날 2일전 저녁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아침까지;

4.6.5.4 심판 : 대회 첫날 1일전 저녁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아침까지;

4.6.5.5 경기장 매니저: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 대회, 지역선수권 대회 첫날 2일전 저녁부터 대회 종료 후 다음날 아침까지;

4.7 참가요강서와 엔트리 양식

4.7.1 대회가 일단 확정되고 나면 주최협회는 참가요강서와 엔트리 양식 (참가자수, 참가자명) 그리고 기타 정보들을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승인과 웹사이트 게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4.7.2 엔트리 :

4.7.2.1 조직위원회

4.7.2.1.1 조직위원회는 엔트리가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로 동시에 제출되지 않았을 시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4.7.2.1.2 참가자 명이 포함된 최종 엔트리는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시에만 받아들여진다.

4.7.2.1.3 조직위원회는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최종엔트리를 절대 수정할 수 없다.

4.7.2.1.4 엔트리는 오로지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환대, 비용납부, 수송 등)

4.7.2.1.5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에 의해 사용되는 특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위한 모든 정보

는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준비되어진다.

4.7.2.1.6 ITTF PTT 웹사이트에 선수명단이 게재된 후에는 엔트리를 받지 않는다.

4.7.2.1.7 ITTF PTT 웹사이트에 선수명단이 게재될 때까지는 선수명단은 기밀을 유지한다.

4.7.2.1.8 선수의 생년월일 없이는 어떠한 엔트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7.2.2 참가협회

4.7.2.2.1 모든 엔트리는 반드시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와 조직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가 엔트리를 접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엔트리는 승인되지 않는다.

4.7.2.2.2 신인선수들의 대회참가를 위해서는 대회에 참가하는 해당협회는 우선 반드시 선수의 신상정보와 함께 여권사본을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로 보내야한다. 이후 해당 협회는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로부터 ID번호를 부여받는다.

4.7.2.2.3 최종 엔트리의 변경은 1차 엔트리와 유사하며 2차 엔트리 (선수명) 작성 과정을 따라야 한다.

4.7.2.2.4 최종 엔트리는 선수의 출생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엔트리는 승인되지 않는다.

4.8 경기:

4.8.1 대회주기 1년차 지역선수권 대회에서 치러지는 단식과 단체전 경기는 장애인탁구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치러지는 방식과 같아야하며 대회주기 3년차 지역선수권 대회에서 치러지는 단식 경기는 패럴림픽 대회에서 치러지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

4.8.2 대회의 세부 경기들은 이하와 같다:

4.8.2.1 남여 1~10 체급 (필요시 통합)과 11체급 단식 경기

4.8.2.2 남녀 1~10 체급 (필요시 통합)과 11체급 단체전 경기

4.8.2.3 남녀 1~10 체급 (필요시 통합)과 11체급 주니어 단식경기

4.8.2.4 수시로 ITTF 장애인탁구위원회에 의해서 정해진 기타 국제대회 이벤트, (필요시 통합)

4.8.2.5 단식경기는 단체전 전에 이루어진다.

4.8.2.6 모든 경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 1개, 은 1개, 동메달 2개가 수여 한다. :

4.8.2.6.1 Fa 20점, 40점, 50점, 80점 대회에서 플레이오프 없이 양선수와 팀에게 모두 동메달을 수여한 경우.

4.8.2.6.2 단체전에서 모든 선수에게 메달이 수여된 경우.

4.8.2.6.3 5명 혹은 5팀으로 이루어진 리그전을 치를시 1개의 동메달만을 수여한다.

4.8.2.6.4 세계선수권 대회와 지역선수권 대회의 단체전에서는 팀당 한명의 코치 또는 감독에게 메달이 수여된다.

단식	메달	단체전	메달
4명	금메달, 은메달	4팀	금메달, 은메달
5명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	5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

4.8.3 Fa 20점, 40점 대회, 지역선수권 대회와 주니어 대회에서는 오로지 두 개의 협회를 대표하는 4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한 단식 경기만이 구성되어질 수 있다. 3명 이하의 선수가 참가한 단식 경기는 심판이 TD와 상의 후 더 낮은 체급에 우선권을 주고 통합되어야 한다.

4.8.4 오로지 4팀 이상이 참가한 단체전 이벤트만이 치러지며 그 이하로 참가한 경기는 심판이 TD와 상의 후 더 낮은 체급에 우선권을 주고 통합되어야 한다. (경기가 치러진 경우) 타이틀과 함께 점수는 수여되지만 메달은 수여되지 않는다.

예시:

출전 경기	참가 팀 수	경기 가능여부
TF1	0	경기 불가
TF1-2	1	경기 불가
TF1-3	5	경기가 반드시 조직되어야한다
TF4	2	경기 불가
TF4-5	3	경기는 성립 점수는 인정되지만 메달 미수여

4.8.5 모든 장애인탁구 토너먼트의 유니폼은 반드시 조항 6을 따른다.

4.9 경기 구성방식

4.9.1 단식 경기

4.9.1.1 Factor 대회

4.9.1.1.1 협회 당 체급별로 4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4.9.1.1.1.1 두 개의 체급이 통합된 경우 협회 당 체급별로 같은 체급에서 최대 3명이 포함된 5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4.9.1.1.1.2 세 개의 체급이 통합된 경우 협회 당 체급별로 같은 체급에서 최대 3명이 포함된 7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4.9.1.1.2 협회 당 체급별로 5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4.9.1.1.2.1 두 개의 체급이 통합된 경우 협회 당 체급별로 같은 체급에서 최대 3명이 포함된 6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4.9.1.1.2.2 세 개의 체급이 통합된 경우 협회 당 체급별로 같은 체급에서 최대 3명이 포함된 8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4.9.1.1.3 협회 당 체급별로 6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4.9.1.1.3.1 두 개의 체급이 통합된 경우 협회 당 체급별로 같은 체급에서 최대 3명이 포함된 7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4.9.1.1.3.2 세 개의 체급이 통합된 경우 협회 당 체급별로 같은 체급에서 최대 3명이 포함된 9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4.9.2 모든 대회:

4.9.2.1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해 1차 엔트리 (참가자 수 제출) 이후 경기가 통합되고 그로 인하여 통합된 이벤트에 (협회 당 경기)에 허용 된 인원 이상이 협회에 주어진 경우, 주최자는 해당 협회에 (협회 당) 경기별 허용된 참가자 수만이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해당 경기를 위한 정원은 수정된다.

4.9.2.2 참가자 명단이 장애인탁구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대회 15일 전) 게재된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참가를 포기한 선수는 (조항 5의) ITTF "랭킹 불이행 방침 (Ranking Default Policy)"에 따라 (랭킹) 점수를 잃는다.

- 4.9.2.3 5체급 또는 10체급 단식 경기가 4명이 되지 않는 경우 4명의 최소 참가자 수를 만들기 위해 TD는 반드시 이 체급을 다음으로 낮은 체급으로 통합하거나 그 다음으로 낮은 통합체급으로 통합해야 한다.
- 4.9.2.4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리그전 방식으로 치러지며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그룹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되고 우선적으로 4명으로 한 그룹을 구성한다. 만약 참가자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종목은 토너먼트 없이 리그전으로만 시합을 진행한다.
- 4.9.2.5 그룹의 수는 TD와 상의 후 심판이 결정한다.
- 4.9.2.6 그룹의 숫자가 2배수가 아닌 경우, 가장 높은 순위의 시드배정을 받은 선수가 속해있던 그룹에서 승리한 선수/팀이 본선 토너먼트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부전승을 거둔다;
- 4.9.2.7 각 그룹의 1위와 2위는 본선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는 2라운드에 진출한다;
- 4.9.2.8 선수는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선수의 체급이 통합되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체급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는 이상 오로지 자신의 국제체급분류 카드에 명시된 체급에서만 경기가 가능하다.
- 4.9.2.9 모든 경기는 5전 3선승제로 치러진다.

4.9.3 **단체전:**

- 4.9.3.1 Fa 40점 과 20점 대회에서는 같은 협회의 선수들인 경우 협회 당 최대 2팀이 출전할 수 있다.
- 4.9.3.2 다른 국가의 선수들은 Fa40점과 20점 대회에서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만약 같은 협회 소속의 선수들이 같은 종목에 3명이 있는 경우, 가장 랭킹이 낮은 선수만이 다른 국가의 선수와 팀을 이룰 수 있다.
- 4.9.3.3 다른 체급의 선수들이 팀을 이룰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팀은 반드시 팀 내 가장 높은 체급을 가진 선수의 체급에서 경기를 치러야한다. 가장 높은 체급을 가진 선수는 반드시 모든 단체전 경기의 단식 또는 복식 경기를 치러야한다.
- 4.9.3.4 어떤 대회에서도 한 선수가 하나 이상의 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다.
- 4.9.3.5 참가 수 미달로 체급이 통합되고 체급통합으로 인해 한 이벤트에 협회 당 2팀 이상이 된 경우, 주최자는 해당협회에 이벤트 당 오로지 2팀만이 참가 가능하고 이 경기를 위한 참가자는 수정되어 짐을 알려주어야 한다.
- 4.9.3.6 장애인탁구 지역 선수권대회를 위한 단체전 구성 : 3전 2선승제 (1 복 2 단식).
팀은 2~3명으로 구성되며 경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복식
2. 단식 1경기 (A-X)
3. 단식 2경기 (B-Y)

모든 선수들은 단체전을 위해 지명된 선수들로부터 선발된다. 단체전 경기 전 A, B 혹은 X, Y측을 정하는 결정권은 제비뽑기로 정하며 팀 코치는 각 단식 선수들에게 문자를 배정하여 심판 또는 그들의 대표자에게 이름을 지명한다. 모든 명단은 반드시 단체전 시작 전에 지명되어야 한다.

- 4.9.3.7 TTF-PTT 승인하의 모든 장애인 탁구대회의 단체전 경기 시스템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우선적으로 한 그룹 당 4팀으로 구성해 리그전 형식으로 진행한다. 각 조의 상위 2팀이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 동메달을 위한 단체전이 없이 본선 토너먼트 경기를 치른다. 만약 참가자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종목은 본선 토너먼트 없이 리그전으로만 시합을 진행한다.
- 4.9.3.8 많은 수의 팀 참가로 인하여 대회 스케줄에 문제가 생길 시 심판장은 TD와 협력하여 단체전 경기는 오로지 토너먼트 경기방식만을 치를지 결정한다.

4.10 시드배정:

- 4.10.1 모든 대회에서는 매달 1일 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발행되는 가장 최신화 된 세계 랭킹 리스트가 시드배정을 위해 이용되어 진다.
- 4.10.2 단체전에서 시드배정 리스트는 팀 내 상위 2명의 랭킹 포인트를 조합하여 결정한다.
- 4.10.3 대진추첨의 변경은 선수가 재 등급분류 된 경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 4.10.4 지역선수권 대회와 국제 오픈대회에서 체급의 변경은 경기 추첨 24시간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에만 대회 심사위원단이 시간제한을 24시간보다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11 대진 추첨

- 4.11.1 모든 대회에서 대진 추첨은 반드시 대표자 회의 전 필수 대회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판에 의해 이루어지고 대표자 회의에서 배포되어 진다.

4.12 심사 위원단:

- 4.12.1 Fa 20점 , 40점, 주니어 대회를 위한 독립된 심사 위원단은 TD에 의하여 도착 후 결정된다.

4.13 징계

- 4.13.1 워크 오버 룰: 어떠한 이유에서도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면 랭킹 포인트는 주어지지 않는다.
- 4.13.1.2 경기가 시작되고 1점이라도 경기가 진행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랭킹 포인트가 주어진다.
- 4.13.1.3 선수의 장애 또는 컨디션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심판은 메디컬 등급분류사 또는 대회장 내의 의사와 상담 후 가장 짧은 적정시간의 의학적으로 회복을 허락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는다.
- 4.13.2 참가취소
- 4.13.2.1 만약 선수가 참가를 취소한 경우
- 4.13.2.2 2차 엔트리 마감일 전이라면 1차 엔트리 제출 시 함께 제출된 참가비는 몰수된다.
- 4.13.2.3 2차 엔트리 마감일 후라면 선수의 통제 밖의 상황이 아닌 경우 추가 30%의 참가비가 납부되어야 한다.
- 4.13.2.4 만약 벌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ITTF는 홈페이지에 협회이름과 선수이름을 공지한다.

4.14 휠체어 :

- 4.14.1 휠체어는 반드시 적어도 두 개의 큰 휠과 하나의 작은 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14.2 모든 대회에서 무릎 위쪽의 어떠한 신체부위도 의자에 붙어있지 않아야한다. 하지만 의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선수가 묶거나 감싸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사실은 선수의 국제 등급분류 카드에 표시되어진다.

- 4.14.3 1개 혹은 최대 2개의 쿠션의 높이는 휠체어에 다른 기타 추가 부착물 없이 경기 중 상태가 15cm로 제한된다.
- 4.14.4 만약 휠체어에 추가적인 보조 구조가 더해진 경우 휠체어에 부착되어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쿠션 제외) 선수는 반드시 그 변형된 휠체어에서 등급분류 또는 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국제 등급분류 카드에 명시된 승인이 없는 휠체어의 모든 추가 부착물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자격이 박탈된다.

4.15 등급분류

- 4.15.1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대회 이전 혹은 대회 중 만들어진 모든 등급 변경은 다음 대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 4.15.2 등급분류에 이어 등급분류 패널은 국제 등급분류 카드 (ICC)에 다음을 명시한다. :
 - 4.15.2.1 등급분류는 확정(C) 또는 재검토(R) 이다;
 - 4.15.2.2 정상적인 서브 수행에 있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사항
 - 4.15.2.3 허리 주변을 두르는 벨트 및 코르셋의 사용 허가와 이의 사용 기간 명시:
 - 4.15.2.3.1 영구적 인지 또는
 - 4.15.2.3.2 일시적 인지 (선수는 반드시 벨트 또는 코르셋이 필요한 기간을 증명하는 의사의 서명과 날짜가 표시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4.16 세미나 :

- 4.16.1 4일 간의 등급분류 세미나는 지역선수권 대회에서의 등급분류 이전에 개최되거나 Fa20 점 국제대회에서도 개최 조직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사무국에 요청하여 주최할 수 있다. 세미나 참가비는 참가자가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제출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4.16.1.1 레벨 A 세미나 참가비 : €50
 - 4.16.1.2 레벨 B/C 세미나 참가비 : €100
- 4.16.2 하루 일정의 상급 심판강습회 (Advanced Umpire Training Seminar)는 심판평가 (Umpire Evaluation)와 병행하여 지역선수권 대회와 세계선수권에서 주최된다. URC에 의해 정해진 일인당 세미나 비용은 참가자가 URC에 지불되어진다.
- 4.16.3 2일 간의 기술대표(TD) 세미나 (Technical Delegate Seminar)는 지역선수권대회에서 주최된다. 일인당 €50의 세미나 참가비는 참가자가 ITTF 장애인탁구 위원회에 제출한다.
- 4.16.4 주최자는 참가자를 위한 컨퍼런스 룸(강의실), 식사, 다과,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 4.16.5 주최자는 세미나 기간 동안의 강사들의 환대비용과 일급을 지급해야 한다.
- 4.16.6 참가자는 자신의 교통비와 숙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불참에 대한 랭킹디폴트 방침

원칙

선수가 해당 대회 혹은 경기에 불참한 경우, 선수는 "No-Show"(불참 혹은 기권)" 별 대회 별로 35.00 페널티 점수를 부여받는다. "No-Show"(불참 혹은 기권)"는 ITTF 장애인탁구 홈페이지에 선수명단이 게재된 직후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대회 중 선수가 대회 중 예정된 스케줄에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개인전과 단체전의) 각각의 첫 번째 경기에만 영향을 미친다. 35점의 페널티 점수는 적용일로부터 **15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5.1 2016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는 랭킹 디폴트 방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모든 ITTF 장애인탁구 이벤트와 패럴림픽 대회
 - a) 패럴림픽 대회
 - b) ITTF PTT 월드 타이틀 이벤트
 - c) ITTF PTT 대륙권 타이틀 이벤트
 - d) ITTF PTT 승인 이벤트

5.2 랭킹디폴트 위원회

랭킹디폴트 위원회는 해당 방침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랭킹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회

- 기술위원 (또는 기술위원 지명인)
- 규정위원회 대표 (의장 또는 의장 지명인)
- 해당 대회의 기술대표(TD) (기록과 차후조치 제안)
- 장애인탁구 위원회의 기술고문

5.3 대회 시작 전 No-Show 혹은 기권 (단식 & 단체전)

	결정
대회를 위해 지명된 선수 1. 장애인탁구 홈페이지에 선수명단이 게재되기 전 선수가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조직위에게 알린 경우	비적용
2. 장애인탁구 홈페이지에 선수명단이 게재된 후 선수가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조직위에게 알린 경우	적용
3. 어떤 이유에서든 대진추첨 이후 선수가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조직위에게 알린 경우	적용
4. 조직위에 알리지 않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적용

대회를 책임지는 기술대표는 랭킹 디폴트위원회에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만한 대상이 되는 각 케이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 규제에서 다루는 모든 케이스를 보고한다. 위원회는 이후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한다.

5.4 대회 중 No-show 혹은 기권 (단식&단체전)

	결정
a) (단식 또는 단체전) 이벤트의 특정 스테이지에서, 선수가 경기 진행 중에 있으나, 동일 이벤트 중 다음 경기를 치르지 않은 경우	적용
b) 선수의 라켓이 규정에 어긋나고 여분의 라켓이 없는 이유로 경기 시작을 못하는 경우	적용
c) 선수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시합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ITTF 핸드북 4.1.7 조항 참고)	적용
d) 하나 이상의 이벤트에 참가신청한 선수가 (출전 신청한) 이벤트 중 한 경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적용
e) 선수가 다른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자격이 박탈당하여 경기나 이벤트에 나타나지 못한 경우.	적용
f) 선수가 (클럽 또는 협회의 책무로 인해, 혹은 비행 편 시간문제,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 대회 종료 이전에 떠나 경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적용
g) 선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기를 기권하고 선수가 출전해야 하는 다음 경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랭킹디폴트 위원회에 의해 결정)	적용/미적용*
h)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단체전 경기를 기권한 선수 같은 팀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는 팀 동료	적용 미적용

5.5 단체전

팀의 단지 일부로서만 고려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라켓이 규정에 어긋나고 다른 적합한 것이 없어 경기를 단체전 경기의 단식 경기를 하지 못하거나 심판에 의해 남은 경기에 대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단체전 경기에서 한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경우, 팀 전체가 경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팀의 경기복 색상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라도 심판에 의해 경기출전이 허용되지 않을 시 선수들에게는 어떠한 개인 페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5.6 이의제기

랭킹디폴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선수 혹은 협회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제기는 집행 위원회로 제출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6. 경기복장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기타 참가자들은 반드시 ITTF 핸드북 3.2.2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탁구선수의 경기복장은 반드시 ITTF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 선수는 반드시 가능한 어두운 색과 밝은 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다른 색깔 계열의 셔츠와 쇼트 또는 스커트를 2쌍씩 준비해야 한다. 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다른 색깔 계열의 셔츠와 쇼트 또는 스커트를 2쌍씩 준비해야 하며 팀의 선수들은 같은 색상의 동일한 경기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반드시 선수명과 3글자의 선수의 국가명이 각 셔츠의 등판에 프린트 되어 있어야 한다.** 셔츠는 반드시 규정 3.2.2.2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셔츠, 스커트 또는 쇼트, 기타 셔츠의 소매와 옷깃의 메인 색상은 경기에 사용되는 공의 색과 확연하게 달라야한다."



범례 : 셔츠 등판

각 선수는 반드시 적어도 두 쌍의 다른 색상의 셔츠를 준비해야 한다. (이름의 첫 번째 스펠링 + 축약하지 않은 가족의 성 또는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반대로 하여 표기한) 선수의 이름은 반드시 셔츠의 위쪽 1/3 길이로 등판에 프린트 되어야 한다.

6. 연락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mese Barsai

장애인탁구 운영 담당

전화 : +41 21 340 70 90 || 이메일 : ebarsai@ittf.com

Georgios Seliniotakis

토머먼트 선수등록 담당

이메일 : gselinio@gmail.com

최종 업데이트 일자 : 2017년 11월 13일